

의안번호	제3075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3. 13.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5호
----------	--------

제출연월일: 2026. 3. 13.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하고 학생선수, 체육지도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고성군 스포츠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입주 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5조)

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다.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표준임대료 기준 준용 산정

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주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조

- 2)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0조
- 3)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조
-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나.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시설유지보수비 확보(15,000천 원)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30064(2025. 8. 6.)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input type="checkbox"/>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330호

가) 예고기간: 2025. 8. 11.~2025. 9. 1.(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불임

#### 4. 본문: 불임과 같음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빌리지”란 학생선수, 체육지도자 등에게 숙소 및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건립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지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스포츠빌리지의 사업주체인 고성군을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스포츠빌리지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지정스포츠클럽지도자 및 선수, 학생선수 및 보호자,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서 행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스포츠빌리지의 위치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2.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91번지 일원
3. 시설현황: 별표 1

제4조(입주 자격) ① 스포츠빌리지 내 단독주택 입주 자격은 원거리 통

학 선수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
2. 고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학생선수팀(초·중·고등학교)

② 스포츠빌리지 다가구주택 입주 자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입주 신청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체육단체 소속 여부
2. 선수의 연령
3. 선수의 수상 경력 등 체육 활동실적

4.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나. 체육시설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고성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빌리지 운영의 공익성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입주 기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주 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군수가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등)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입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상한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군수는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등 조치) ① 입주자가 자진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준용)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시설현황(제3조 관련)

구분		공급면적(m <sup>2</sup> )	명칭			비고
단독주택		136.5	A동, B동, C동, D동			
다가구 주택	1층	31.04, 31.15	1동	2동	3동	18가구
			101호, 102호, 103호	101호, 102호, 103호	101호, 102호, 103호	
	2층	24.33, 24.81, 27.24	201호, 202호, 203호	201호, 202호, 203호	201호, 202호, 203호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14조 관련)**

공급면적(m <sup>2</sup> )	임대보증금(원)	임대료(원)/년	임대료(원)/월	비고
136.5	13,006,000	3,096,000	258,000	단독주택
31.04~31.15	2,968,000	708,000	59,000	다가구주택 1층
24.33~27.24	2,595,000	612,000	51,000	다가구주택 2층



##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입주년월일	년	월	일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해지사유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 제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 제15조(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군수는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단독주택 4동, 다가구주택 3동(18가구) 유지 보수비

다. 소요예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0천 원(연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15,000천 원으로 예상되며, 수반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